

2021년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2. 9.(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50건(안전번호 제2021-14599호~1500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14599호는 △△△△△에 링크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심의의 대상이 되는 원천게시물의 URL주소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점, 카페 링크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14600호는 음원을 이용하여 제작한 홍보 영상물로 불법복제물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 홍보를 위하여 자사 저작물을 포함해 제작한 영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게시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1-14601호~14603호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645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93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안건번호 제2021-402호~49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93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E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B 위원,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5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65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59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이며 ○○○○○에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직접 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원천게시물의 URL주소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점, 카페 링크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

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카페 자체가 영화를 서로 주고 받는 카페로 보임.
- A 위원: 링크 게시물이기는 하나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원천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어 단순히 부결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자칫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현재 위원회는 원천게시물이 국내 서버에 소재하는 링크게시물의 경우 원천게시물에만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메일 등으로 불법복제물의 배포를 예정한 게시물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음.
- A 위원: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도 경고는 필요하다는 생각임.
- C 위원: 링크 게시물과 원천 게시물을 같은 사람이 게시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게시자가 스스로 문제될 것으로 생각해서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카페 대표자가 쓴 '☆☆☆☆☆☆☆☆☆☆', '★★' 등 글을보면 카페 자체의 저작권 위반이 심각해 보임.
- C 위원: 이 카페에는 링크게시물들만 게시되어 있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카페는 회원제여서 신고 안전 외의 게시물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A 위원: 이러한 사안에 대해 사무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임.
- C 위원: 예전에 폐쇄 형태 즉 회원제 카페에 임의로 가입하는 방법을 취했다가 카페 이용자들의 권리, 사생활의 비밀 등과 상호 충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며 심의의견서에 의견을 남겨 두겠음.
- C 위원: 이 안건의 경우에는 부결하는데 이견이 없으며, 링크게시물의 경우 링크 자체는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것은 아니므로, '불법복제물등을 게시'한 것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B 위원: 해당 카페를 가입해서 살펴보니 최신 일본드라마 다운 방법 및 토렌트 설치 쉽게 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는 등 카페 게시물 자체가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불법으로 보임.
- E 위원: 해당 카페 게시물에 대해 한건씩 심의를 올리면 수천 건짜리 심의가 될 수 있음.
- 오진해 전문위원: 해당 카페에 대해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해당 안전과 같이 국민 오픈 모니터링 형태로 비공개 사이트에 대한 민원을 제기받아 충분한 증거가 수집된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앞으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A 위원: 단순 부결보다는 저작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며, 충분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다면 수사 쪽으로 연결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임.
- C 위원: 시정권고 조치를 하는 것 대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수사의뢰 등 수사기관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이전에도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음.
- A 위원: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권고 방안을 마련해야 함. 현재 내부 모니터링도 하고 민원인과 권리자의 신고도 받지만, 사안과 같은 링크의 경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C 위원: 링크는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 판결이 갈리고 있고, 불법 복제물 링크 건에 대해서 현재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 저작권 침해 의제가 포함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그에 맞추어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현재는 판례와 법규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근거 없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A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조금 더 검토나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제2021-12599호는 부결 의견에 모두 동의 하시는지 의견을 구함.

- C, B,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2599호는 원천게시물의 URL주소와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 점, 카페 링크게시물이 이미 삭제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260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회사 홍보 영상에 음원을 삽입한 건임.

- C 위원: 영상을 외주업체에서 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외주업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을 하였는가?

- 오진해 전문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회사에서 외주업체에 확인을 하고 사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힘.

- A 위원: '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가 이용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보다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불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으로, 외주업체가 이용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들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회사와 소통한 결과 저작권법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삭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점'이 부결 의견의 적절한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이런 음원 사용에 대해 확실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규정이 필요함.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이나 학교에서 체험활동, 졸업식 등의 영상을 만든 다음 부수적으로 음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이용형태들이 다 사라지고 있으며, 무료 음원 사이트들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저작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원들이 유통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B 위원: 부동산 같은 재산은 등기부가 있으니 소유자 목록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만, 음원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너무 어려움.
- B 위원: 그리고 ♥♥♥♥♥♥의 경우 제가 직접 파일을 올려보니 2Gb 이상의 파일은 경고 표시와 함께 올릴 수가 없는데, 안전번호 제 2021-12599호의 ♥♥는 수백개의 불법 파일이 압축파일로 올라와 있고, ♣♣♣는 자체적으로 봇에 의한 관리를 하는데 해당 ♣♣는 봇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도 의문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B 위원님이 제안을 하신 것에 대해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번호 제2021-12600호에 대해 부결로 처리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구함.
- C, B, E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2600호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회사 홍보를 위하여 자사 저작물을 포함해 제작한 영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정권고를 내릴 경우 게시자의 영업 활동이 제한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 헌

법상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601호~14603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불법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A,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4601호~1460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4604호~1500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추억속으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1-14624호 음악 '추억속으로'는 웹하드에서 20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방송 '여신강림'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920호 방송 '여신강림'은 '20년 12월~'21년 2월 까지 방영한 한국 드라마임. 웹하드에서 86포인트에 판매 중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영화 '더 프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4923호 영화 '더 프롬'은 '20년 12월 넷플릭스에서 독점으로 공개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3건을 포함한 645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4604호~1500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B,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4604호~1500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4599호, 14600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4601호~1500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402호~494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2. 16.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